

제도와 정책이 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일간 농산물 유통정책의 차이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수익성을 중심으로*

김윤두 채수호 오가영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교수 국제통상·문화학부 겸임교수 경제통상학과 교수

An Study on Effects of Strategy and Policies on the Corporate Profitability: Focusing on the Profitability of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for the Different Agricultural Marketing Policy in Korea and Japan

Yoon-Doo Kim^a, Sue-Ho Chae^b, Ka-Young Oh^c

^a Department of Economics and Trade, Konkuk University, South Korea

^b Division of International Trade & Culture, Konkuk University, South Korea

^c Department of Economics and Trade, Konkuk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30 May 2021, Revised 15 June 2021, Accepted 23 June 2021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intend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varied institutional systems and policies that regulate or define operations of enterprises upon the profitability of private enterprises through case analysi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e systems and differences in the institution and commodity distribution in Korea and Japan, which define the operation of the “Garak Wholesale Market” and “Ota Wholesale Market”. We were examined in the present study, and the statistical data pertinent to the trade volume and profitability of wholesale market corporations that substantially run both markets, were analyzed.

Findings - The competition among the corporations that run the “Garak Wholesale Market” substantially is limited due to regulations over the mode of transaction and monopoly of trust thereby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profitability and safety are guaranteed. However, the institutional autonomy that enabled each distributor in the “Ota Wholesale Market” to compete with each other freely caused the distributors therein face difficulties in securing stable profits due to the relatively poor level of profitability resulted from the autonomy.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It seems the autonomy in commercial transaction in the “Garak Wholesale Market” in Korea needs to be secured to promote the competition of distributors therein through an amelioration of institutional systems and amendment of relevant laws that prescribe current management of various distributors/operators in the market.

Keywords: Agricultural Marketing, Profitability, Regulation, Wholesale Markets,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JEL Classifications: K3, L1, L5, M1

* 이 논문은 2020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a First Author, E-mail: ifvma@kku.ac.kr

^b Co-Author, E-mail: dudaji104@naver.com

^c Corresponding Author, E-mail: ohkayoung@kku.ac.kr

© 2021 The Institute of Management and Economy Research.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한국 농산물은 주로 농산물도매시장 통해 유통되고 있다. 한국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근거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생산자와 구매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개설되어 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의 신선도와 상품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출하된 농산물에 대한 가격 결정과 소매단계의 유통주체인 소매상 또는 가공업체 등으로 농산물을 분산하는 중심적인 유통경로이다.

2018년 기준 한국 농산물도매시장 32개소의 거래물량은 6,843천톤, 거래금액은 11,708십억원으로 국내 농산물의 58.9%가 농산물도매시장을 경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산물 유통에 있어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에는 다양한 유통주체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생산지로부터 농산물을 수집하는 도매시장법인, 그리고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여 소매상 등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중도매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농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주체는 농안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원칙 등을 준수하여 농산물을 거래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도매시장법인은 주식회사 형태로 경영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으나 운영 및 경영에 있어 법률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 다른 민간기업과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도매시장법인은 농산물을 중도매인에게 판매하는 방식,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영업활동의 범위도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실태에 대한 정부의 평가도 매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법률의 제한 하에서 운영되는 도매시장법인은 매출 또는 수익확보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정적인 높은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거래규모가 가장 큰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도매시장)’의 수익성은 동일업종 대비 현격히 높은 수준이다. 즉, 제도적 제한이 오히려 도매시장법인 영업의 지속성과 수익확보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지금의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체제와 관련 제도들은 농산물도매시장 개설 초기 주로 일본 농산물도매시장을 벤치마킹하여 일본과 한국의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체제는 매우 유사한 형태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간 농산물도매시장에서의 농산물 유통체제와

제도 간 차이점을 살펴보고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농산물도매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 서울시 가락도매시장의 5개 도매시장법인과 일본 동경도 도매시장의 10개 도매업자(卸売業者)(도매시장법인) 간 운영실적 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제도 및 법률이 기업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I. 한국·일본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련 제도

1. 한국 농산물도매시장 거래체제와 관련 제도 분석

1) 한국 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체제

한국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거래 주체는 도매시장법인이다. 도매시장법인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판장은 농협 또는 원협 등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주체이지만 회계관리를 농협중앙회 등에서 관리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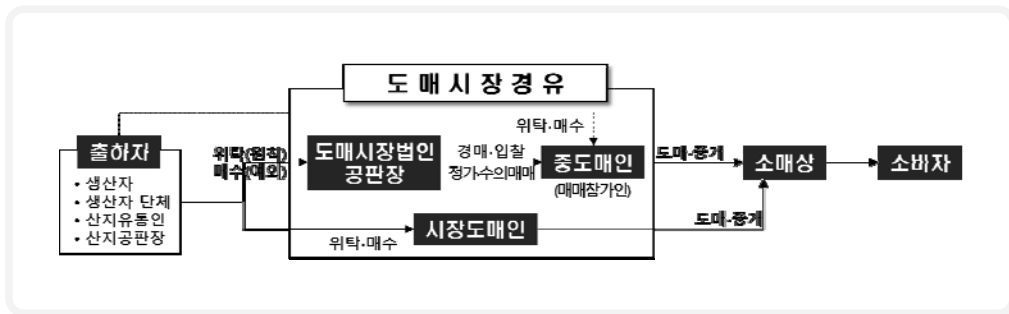
도매시장법인은 생산자들로부터 농산물을 수탁받아 경매·입찰 또는 정가·수의매매 방법을 통해 중도매인에게 판매하며, 판매한 대금 중 7%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이하 위탁 수수료)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매시장법인 이외의 농산물 유통주체인 시장도매인의 경우 생산지로부터 농산물을 수탁 또는 매수하여 구매자인 소매상, 중·소형마트 등으로 분산하고 있다.

Fig. 1.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예외적인 거래방법으로 중도매인이 직접 산지로부터 농산물을 수집하여 소매상 등으로 분산하는 형태이며, 농안법에서는 ‘비상장 거래’로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중도매인이 시장도매인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에서 명시하고 있는 3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하 개설자)이 지정한 품목을 허가받은 중도매인만이 거래할 수 있다. 비상장 거래에 해당하는 품목의 조건을 요약하면 첫째,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이 누적비율 하위 3% 미만인 소량 품목, 둘째,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마지막으로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품목을 매입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개설자가 판단하는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1.의 매매참가인은 ‘상장된 농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 중도매인을 제외하고 농산물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한 가공업자, 소매업자, 수출업자 등 농산물 대량 수요자를 의미한다.

Fig. 1. The Agricultural Product Trading System in Korean Wholesale Markets



Note) The dotted line is the exceptional path

한국 농산물 유통주체 중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산지로부터 수집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판매대상의 차이이다.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매인에게 물량을 분산하고, 중도매인이 소매점, 중·소형마트 등으로 판매하는 구조인 반면, 시장도매인의 경우 수집한 농산물을 바로 소매점, 중·소형마트 등으로 판매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거래체계 중 한국에서 중심이 되는 거래체계는 도매시장법인을 통한 거래이다. 전국 32개 농산물도매시장의 2018년 거래물량을 기준으로 도매시장법인을 통해 거래되는 물량의 비중은 87.6%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시장도매인의 거래물량 비중은 5.0% 수준이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가락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총 5개소 운영 중이다. 이들의 거래규모는 전국 48개 도매시장법인 거래물량의 45.9%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의 농산물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한국 농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관련 제도 분석

한국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 근거는 농안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중 도매시장법인 운영에 대한 법률적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매시장법인은 농안법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에 따라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로 명시하고 있다. 즉, 도매시장법인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5년~10년간 지정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한 형태이다.

둘째로 도매시장법인이 생산지로부터 농산물을 수집할 때 수집방법에 대해서도 제한을 하고 있다. 농안법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단, 하위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주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매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은 산지로부터 농산물을 수집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을 받아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다.

셋째, 수집한 농산물에 대한 매매방법에 대해서도 법률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농안법 제32조(매매방법)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은 농산물을 거래할 때 경매·입찰, 정가·수의매매를 이용하도록 지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도매시장법인은 전자거래 등 일부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농산물도매시장 외 판매업무를 할 수 없다. 즉,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며, 중도매인(매매참가인)을 제외한 주체에게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농안법 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은 농산물의 판매업무 외 겸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가공·보관·후숙·저장 등의 사업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매시장법인의 주요 직원인 경매사에 대한 채용방법과 자격시험에 관한 근거와 농안법 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주요 수입원인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를 7% 이내로 명시하고 있다.

2. 일본 농산물도매시장 거래체계와 관련 제도 분석

1) 일본 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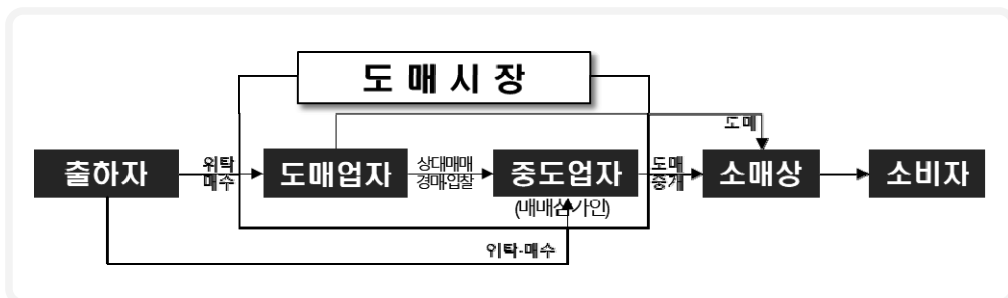
일본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한 농산물 거래체계는 한국과 유사하다. 한국의 농산물도매시장 관련 정책 도입 초기 일본 농산물도매시장 관련 정책과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의 농산물도매시장 유통주체는 한국 도매시장법인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도매업자, 그리고 중도매인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중도업자(仲卸業者)(중도매인)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일본의 도매업자도 생산지로부터 농산물을 수집하는 역할을 하며, 경매·입찰 또는 상대매매(相對買賣)를 통해 중도업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여기서 상대매매는 한국의 정가·수의매매와 유사한 개념으로 협상을 기반으로 한 거래를 의미한다.

일본 농산물도매시장과 한국 농산물도매시장 간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일본 농산물도매시장에는 시장도매인이 없다는 점이다. 즉, 일본은 농산물 산지로부터 수집하는 역할과 소매상 등으로 분산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유통주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관행적으로 중도업자가 산지로부터 농산물을 수집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으며, 도매업자가 중도업자 이외 제3자(소매상 등)에게 도매하는 농산물도 일정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Fig. 2. The Agricultural Product Trading System in Japan Wholesale Markets



Note) The dotted line is the exceptional path

2) 일본 농산물도매시장 도매업자(都賣業者) 관련 제도 분석

일본에도 한국 농안법과 유사하게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도매시장법(都賣市場法)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도매시장법은 2018년 개정되었으며, 2020년 6월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법안에서는 기존에 농산물도매시장 내 농산물 거래 관련 조항들이 대부분 삭제되어 도매업자 및 중도업자 모두 거래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도매업자와 농산물 거래의 제한에 대한 조항들이 대부분 삭제되어 도매업자와 중도업자 모두 거래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2018년의 한국 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과 동경도 도매시장법인 간의 비교분석을 실시함에 따라 2018년 도매시장법 개정 이전 일본의 도매업자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본 도매시장법에서 도매업자와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첫째, 도매업자도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기준 및 관련 서류 등을 법률상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농산물 거래방법에 있어서는 개설자가 경매·입찰 거래품목에 대한 규정이 가능하며, 개설자가 경매·입찰을 통한 거래가 어렵다고 판단하였을 때 상대매매 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일본 중앙도매시장의 경매·입찰 비중은 9.4%에 불과하며, 대부분 상대매매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매업자는 중도업자와 매매참가인 이외에 원칙적으로 제3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는 불가하지만 잔품거래, 동일 개설구역의 타 농산물도매시장 도매업자와의 도매시, 도매의 상대가 소수일 경우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제3자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도매업자의 보증금 기준에 대한 내용 등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한국·일본 농산물도매시장 제도의 주요 차이점

한국과 일본의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체제와 제도를 비교분석 한 결과 가장 큰 차이는 첫째, 시장도매인의 존재 여부였다. 수집과 분산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시장도매인은 한국에만 있으며,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통주체이다. 다음으로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업자의 물량 판매에 대한 거래방법이다. 한국 농안법에서 도매시장법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수탁받아 중도매인에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도매시장법에는 수탁판매 원칙이 없으며, 도매업자는 필요와 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탁과 매수를 통해 농산물을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우 도매시장법인 지정 유효기간이 5~10년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일본 도매업자의 경우 허가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한국과 일본 농산물도매시장의 농산물 유통체제와 제도는 대부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정부분 차이가 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한국·일본의 도매시장법인 비교분석

한국과 일본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비교분석은 거래규모와 수익성에 대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분석대상은 한국의 가락도매시장 5개 도매시장법인, 일본은 동경도 도매시장 10개 도매시장법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분석부분별로 동일 연도의 가장 최근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1 한국·일본 도매시장법인 거래규모 비교분석

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은 총 5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 기준 5개 도매시장법인의 총 거래 물량은 1,943,097톤, 거래금액은 3,253,689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도매시장법인의 평균 거래물량은 388,619톤, 거래금액은 650,738백만원이며, 대아청과의 경우 무·배추 등 채소부류 8개 품목만을 제한적으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물량은 타 도매시장법인보다 많지만 거래금액은 4개 도매시장법인의 50%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Table 1. Trading Volume of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in Garak Wholesale Market

	(Unit: Ton, 1,000,000won)	
	Transaction Volume	Transaction Amount
Seoul	362,024	762,031
Joong Ang	354,026	770,298
DongHwa	389,564	714,222
HanKuk	407,807	668,522
DaE-A	429,676	338,616
Total	1,943,097	3,253,689
Average	388,619	650,738

Source: Korea Agro-Fisheries & Food(2019)

일본 동경도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거래하는 도매업자는 총 10개소이며, 2018년 기준 이들의 거래물량은 1,936,496톤이며, 거래금액은 5,504,246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도매업자 평균 거래물량은 193,650톤, 거래금액은 550,425백만원으로 나타났다.

Table 2. Trading Volume of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in Tyoko, Japan

	(Unit: Ton, 1,000,000won)	
	Transaction Volume	Transaction Amount
Tokyo City Seika Co., Ltd	234,936	782,569
Tokyo Seika Co., Ltd	701,717	2,171,808
Tokyo Ebara Seika Co., Ltd	195,456	556,236
Tokyo Kanda Seika Co., Ltd	78,117	191,195
Tokyo Toshima Vegetable & Fruits Corp.	170,214	401,391
ShinJuku VegeFru Co., Ltd.	221,314	585,488
Tokyo Fuji Seika Co., Ltd	29,556	63,817
Tokyo EbaraFru Co., Ltd	33,496	79,222
Tokyo Senju Seika Co., Ltd	248,734	617,894
Tokyo New Town Seika Co., Ltd	22,956	54,626
Total	1,936,496	5,504,246
Average	193,650	550,425

Note: Transaction Amount applied Average exchange 997.07won(=100円) in 2018

Source: 東京都 (2019)

가락도매시장이 위치한 소비지는 서울로 2015년 기준 인구가 약 986만명 수준이며, 동경도의 인구가 927만명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이 소재하고 있는 배후 지역이 유사하기 때문에 거래물량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거래금액의 경우 한국과 일본 간의 거래물량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물가차이로 인해 거래금액은 일본이 한국보다 약 69.2%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한국·일본 도매시장법인 수익성 비교분석

기업의 수익성을 분석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률’이다. 이를 산출하기 위한 매출액은 도매시장법인의 수수료 수입과 상품매출액의 합을 적용하였다.

가락도매시장 5개 도매시장법인 평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2018년 기준 17.97%이며, 2014년 대비 3.85%p 증가하였다. 2016년의 경우 5개 도매시장법인 평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19.87%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의 경우 2018년 9.03%로 2014년 대비 2.15%p 감소하였다.

Table 3. Average Profitability of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in Garak Wholesale Market

(Unit: %)

Year	Operating Income to Sale	Net Income to Sale
2014	14.12	11.18
2015	15.80	12.35
2016	19.87	15.44
2017	16.94	13.56
2018	17.97	9.03

Sourc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9)

일본 동경도 도매업자 10개소의 수익성 산출에 있어 적용한 매출액은 수탁수수료와 순매출(상품매출), 겸영사업에 따른 매상고의 합으로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2018년 기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0.05%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률은 0.56%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당기순이익률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본 동경도 도매업자의 경우 2018년 고정자산 외 매각대금이 급격한 증가에 따라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을 제외하고 동경도 도매업자의 영업이익률은 최근 5년 동안 1.5% 미만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률은 1%보다 낮은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다.

Table 4. Average Profitability of 10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in Tyoko, Japan

(Unit: %)

Year	Operating Income to Sale	Net Income to Sale
2014	0.84	0.42
2015	1.16	0.98
2016	1.16	0.96
2017	0.92	0.85
2018	0.05	0.56

Source: 東京都 (2020)

한국 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과 일본 동경도 내 도매업자의 수익성을 살펴본 결과 한국과 일본의 농산물 유통체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의 수익성이 일본 동경도 도매업자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한국·일본 도매시장법인 간 차이점과 시사점

가락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과 일본 동경도 도매업자는 유사한 인구수를 갖는 도시의 배후지를 가지고 있으며, 연간 거래하는 물량도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도매시장법인과 일본 도매업자의 수익성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유사한 사업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과 간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1. 거래체계와 거래방법의 차이점 분석

우선 가락도매시장과 일본 동경도 도매시장 간 거래체계와 거래방법에 대하여 비교해보고자 한다. 가락도매시장의 경우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농산물이 출하되는 유형을 살펴보면 생산자 개인출하 비중이 25.3%이며, 생산자들 간 공동으로 출하하는 비중은 11.2%,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비중은 51.3%, 무·배추 등 산지유통인이 출하하는 비중은 1.5%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채소의 비중이 78.7%로 과일부류 21.3%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을 수집하는 방식은 한국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수탁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위탁 비중이 87.7%이며, 매수를 통해 구입하는 비중은 0.3%에 불과하다. 이 외에 중도매인이 직접 산지로부터 수집하여 거래하는 비상장거래의 비중은 12.0%로 나타났다.

농안법에서는 농산물도매시장 내 거래는 원칙적으로 경매·입찰 및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락도매시장 반입된 농산물 중 74.0%는 경매·입찰, 14.0%는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로 물량이 분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판매하는 농산물 비중은 0.0017%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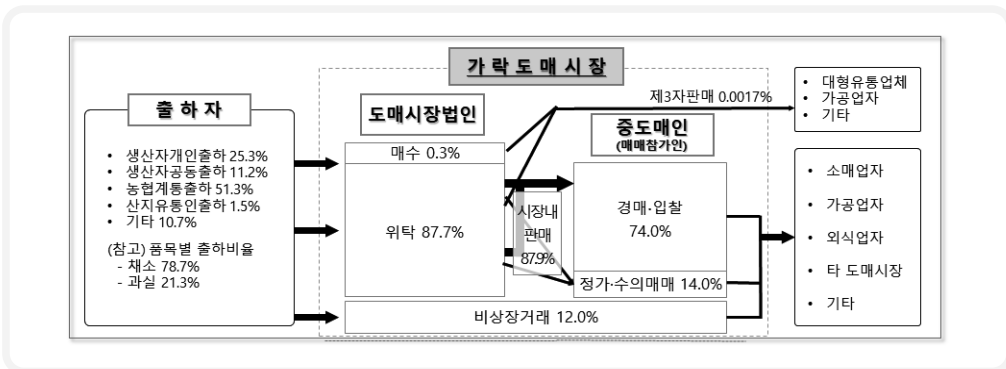
동경도 농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출하유형을 살펴보면 농협계통단체의 출하비중이 58.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산지출하업자 10.8%, 상사 10.5% 순으로 나타났다. 출하자 중 한국과 차별화 되는 부분은 타 농산물도매시장의 도매업자로부터 출하되는 비중이 3.1%, 타 농산물도매시장 중도업자의 출하 비중이 2.4%라는 점이다. 즉, 한국의 경우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출하자 중 25.3%가 개인출하 형태로 영세한 출하자 비중이 일본보다 높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한국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타 농산물도매시장의 물량반입이 가능하고 이를 '전송거래'로 분류하고 있지만 명확한 통계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수치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동경도 농산물도매시장 도매업자가 산지에서 농산물을 수집하는 방식은 위탁 비중이 49.3%로 매수 비중 32.6%보다 높으나, 매수 비중의 경우 한국에 비해 32.3%p 높게 나타났다. 중도업자가 산지에서 농산물을 직접 수집하여 분산하는 비중은 18.1%로 한국 대비 6.1%p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동경도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반입된 농산물 중 중도업자와 매매참가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판매되는 농산물의 비중은 7.6%로 가락도매시장과 비교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도매업자가 중도업자 및 매매참가인에게 판매하는 거래방법 중 한국 정가·수의매매와 동일한 거래방법인 상대매매 방법의 비중은 73.7%이며, 경매·입찰의 비중은 8.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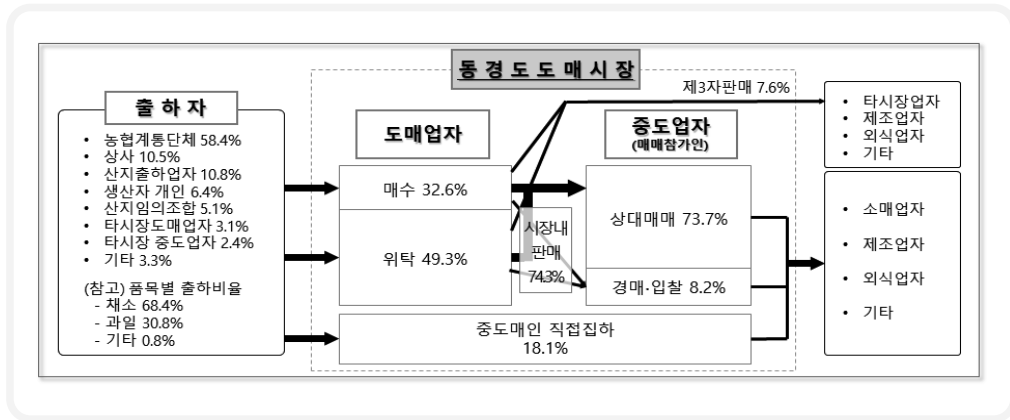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 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체계와 거래방법 차이점을 살펴보면 주요한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한국의 매수 비중은 0.3%로 일본의 매수비중 32.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업자가 매수를 통해 농산물을 수집할 경우 농산물도매시장 반입 시 농산물의 소유권이 도매시장법인(도매업자)으로 이전됨에 따라 이후 결정되는 가격 등에 관한 리스크는 전적으로 도매시장법인(도매업자)가지게 된다. 즉, 출하자의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위탁수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출하자들이 모든 리스크를 갖게 된다. 둘째, 중도매인(중도업자)과 매매참가인에게 판매하는 거래방법 간의 차이이다. 한국의 경우 경매·입찰의 비중이 협의를 기반으로 한 거래방법인 정가·수의매매보다 현격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협상을 기반으로 한 상대매매의 비중이 73.7%로 경매·입찰에 비해 현격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산물에 대한 책임과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아 경매·입찰의 가격 변동에 따른 피해 대부분을 출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경매·입찰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Agricultural Product Trading System in Garak Wholesale Market



Source: Seoul Agro-Fisheries & Food Corporation(2019)

Fig. 4. Agricultural Product Trading System of Wholesale Marteks in Tokyo, Japan



Source: 食料産業局 (2019)

반면 일본의 경우 도매업자 입장에서는 매수거래 물량의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통한 리스크 최소화 및 필요성과 소비자의 정가·정시·정품·정량에 대한 니즈가 확대됨에 따라 상대매매 비중이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거래체계와 거래방법의 차이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업자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거래체계 및 거래방법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체계와 거래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도 및 정책 등에 따라 한국의 대표 농산물도매시장인 가락도매시장의 농산물 수집 형태는 생산자로부터 위탁받는 형태의 비중이 높으며,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에게 판매하는 방법은 경매·입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농산물을 수집함에 있어 위탁과 더불어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산주체인 중도매인이 수집하는 비중도 약 2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농산물을 거래하는 과정에서도 상대매매의 비중이 경매·입찰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두 국가간의 거래체계의 차이는 무엇보다도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규정과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농안법에서는 도매시장의 거래체계를 다양하게 명시하고 있으나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을 수집함에 있어 매수와 같은 방식은 예외적 사항으로 분류하여 거래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도매시장과 관련된 제도적 측면에서 거래방법의 자율성을 담보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거래방법 다양화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 추진 등에 있어서는 매우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기존 정책 및 제도의 주요 내용 중 다양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철폐함으로써 농산물도매시장의 유통주체들은 자율성이 담보된 시장환경에서 주체간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농산물도매시장 관련 제도 및 정책은 자연스럽게 현재 양국의 농산물 유통환경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며, 이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 주요 유통주체인 도매시장법인의 수익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주요 거래방법인 경매·입찰은 단기 수급상황에 큰 영향을 받으며, 이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은 매우 큰 실정이다. 특히, 도매시장법인의 매출은 대부분 위탁수수료로 농산물의 가격과 물량에 따라 거래되는 금액의 7% 이하 범위 내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농산물 공급과잉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경우의 총 거래금액(가격×물량), 농산물 공급부족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경우 모두 총 거래금액의 변동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가격의 변화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수익성 변화는 크지 않고 모든 리스크는 출하자가 부담한다. 반면, 일본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농산물을 도매업자가 직접 매수하는 비중이 32.6%

수준으로 해당 물량에 대한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는 도매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특히, 도매업자가 지속적으로 매수물량을 확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생산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매수와 위탁거래 모두 이루어짐에 따라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가격변동 리스크를 도매업자가 분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한국은 농산물도매시장 내 거래에 있어 경매·입찰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상대매매(한국의 정가·수의매매) 중심이라는 차이로 인해 도매시장법인(도매업자)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경우 정가·수의매매가 2013년부터 경매·입찰과 같이 일반화된 농산물 거래방법으로 지정되었으나, 2018년 기준 정가·수의매매 비중은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가·수의매매는 협상을 기반으로 한 거래로써 경매·입찰과 달리 농산물 출하자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축소시킬 수 있으나 거래를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도매시장법인의 비용 증가로 활성화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정가·수의매매를 위해서는 도매시장법인 주도하에 출하자와 중도매인 간 협상을 통해 거래를 성사시켜야 함에 따라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일본 동경도 내 도매업자의 직원 수와 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간의 직원수를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매매 비중이 73.7%인 동경도 농산물도매시장의 도매업자 당 평균 임직원 수는 212.8명으로 나타났으며, 경매·입찰 비중이 74%인 가락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법인 당 88명으로 동경도 도매업자 평균 임직원 수의 41.4%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도매시장법인 등은 외형적 목표달성만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로 인해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목표와 달리 오히려 경매·입찰 가격이 정가·수의매매 가격을 선도하는 연구결과도 나타났다(농식품신유통연구원, 2019).

즉, 거래방법의 차이로 인해 기업의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건비 부분에서 일본 도매업자의 부담이 한국 도매시장법인에 비해 월등히 크다. 또한, 한국의 경우 정가·수의매매 일반화의 가장 큰 목적인 가격안정 등의 편익도 실질적으로 발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 다각화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Table 5. The Number of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Employees in Garak Wholesale Market and Wholesale Markets in Tokyo.

(Unit: Persons)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in Garak	Employees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in Tokyo	Employees
Seoul	97	Tokyo City Seika Co., Ltd	223
Joong Ang	89	Tokyo Seika Co., Ltd	558
DongHwa	99	Tokyo Ebara Seika Co., Ltd	180
HanKuk	89	Tokyo Kanda Seika Co., Ltd	89
Dae-A	66	Tokyo Toshima Vegetable & Fruits Corp.	117
		ShinJuku VegeFru Co., Ltd.	251
		Tokyo Fuji Seika Co., Ltd	46
		Tokyo EbaraFru Co., Ltd	237
		Tokyo Senju Seika Co., Ltd	171
		Tokyo New Town Seika Co., Ltd	256
Total	440	Total	2,128
Average	88	Average	212.8

Source: Seoul Agro-Fisheries & Food Corporation(2019), 東京都 (2020)

마지막으로 한국은 도매시장법인과 타 유통주체 간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 도매시장법인 이외에 아주 예외적인 조건 하에서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품목에

대해서만 중도매인이 산지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수집할 수 있는 비상장거래가 가능하다(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이에 따라 전국에서 비상장거래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가락도매시장의 비상장거래 비중은 12.0%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2019년 개정된 ‘도매시장법’에 따라 중도업자가 산지로부터 농산물을 직접수집하는 행위를 농산물도매시장 개설자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일본도매시장 통계정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공식적으로 동경도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업자가 직접 농산물을 수집하는 비중은 18.1%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존 선행연구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약 50% 수준이 중도업자가 직접수집을 통해 거래된다는 결과도 있다(건국대학교, 2017). 즉,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중도업자와 도매업자 간의 경쟁체계를 갖추고 있어 도매업자는 보다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투입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인 위탁 중심의 수집체계,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판매 시 경매·입찰 중심의 거래방법, 중도매인 직접수집 등에 대한 제한적 규제로 인해 경쟁을 위한 주체가 제한되고, 이를 바탕으로 도매시장법인인 상당히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담보 받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농산물도매시장 내 거래방법의 다양화 및 유통주체간 경쟁체계를 갖추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도매업자와 유통주체 간의 경쟁체계가 마련됨으로써 도매업자 수익성은 한국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법률이 기업의 운영방법 명시 및 가이드라인 제시가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농산물 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가락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과 동경도 도매시장 도매업자 간의 사례를 통해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의 농산물 수집방식을 위탁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판매함에 있어 경매·입찰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의 경우 도매업자가 농산물 수집 시 매수와 위탁 비중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균형적이며, 중도업자(매매참가인)에게 판매시 상대매매를 중심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거래체계와 거래방법의 차이는 한국 가락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인 안정적인 높은 수익성을 담보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수집 원칙은 농산물을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출하자에게 모든 리스크를 전가하며, 출하자가 희망하는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담보할 수 없는 구조이다.

또한, 경매·입찰을 중심으로 거래함으로써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은 매우 크지만 도매시장법인인 수수료 중심의 수익 구조를 갖음으로써 수익창출의 안정성이 담보된 구조로 나타났다.

반면, 동경도 농산물도매시장 도매업자는 농산물 수집 시 매수의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임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책임과 가격 결정시 가격 변동성에 대한 책임도 도매업자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로 나타났으며,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상대매매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일본에서는 도매시장법 개정을 통해 중도매인의 농산물 수집, 도매업자의 제3자 판매에 대하여 과거 일정 조건에 따른 규제를 두었으나, 2019년 도매시장법 개정을 통해 중도매인 직접거래를 법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농산물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결정권을 부여함에 따라 농산물 수집의 경쟁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 농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인 국민의 세금으로 개설된 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함에 따라 공공적인 역할을 해야하며, 국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하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거래체계와 거래방법은 오히려 출하자에게 모든 리스크를 넘기고 있으며, 가격 변동성 등을 완화하기 위한 수급조절 등 도매시장법인 본래의 기능보다는 단기적 이익창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농산물도매시장 유통주체 간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경쟁촉진은 신규 유통주체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기존 유통주체인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제한적 역할을 완화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 중 하나로 판단된다.

민간기업인 도매시장법인에게 공공성과 수익성이 높다고 이를 낮출 것을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을 통해 개설 및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매출과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생산자와 구매자를 위한 자체적인 서비스 확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거래체계와 거래방법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References

- 건국대학교 (20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체계 개편연구”
- 건국대학교 (2019), “농산물 유통분야 시장구조 및 실태분석”
- 금융감독원 (2019), “전자공시시스템 기업별 감사보고서(<https://dart.fss.or.kr>)”
- 김균, 최석현 (2020), “정부의 사회적 기업인증제도가 사회적 기업의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아태비즈니스연구*, 11(1), 93-114
- 농식품유통연구원 (2019), “가락시장 청과부류 정가·수익매매 거래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
- 법제처 (20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2019), “2019년 통계자료집”
- 지창수, 오상훈, 이상열 (2020), “생산성과 주가수익률의 관계에서 수익성과 활동성의 매개효과”, *아태비즈니스연구*, 11(2), 189-206.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9), “2018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농산물 유통체계 국제비교분석과 유통정책 개선방향(2/2차년도)”
- 農林水山省 (2019), “卸売市場をめぐる情勢について”
- 農林水山省 (2020), “都賣市場法”
- 東京都 (2020), “東京都卸売市場の卸売業務の現状”
- 東京都 (2020), “東京都中央卸売市場卸売業者総合財務諸表”